

2024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빅테크 기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독점문제와 규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름	신재진
전공	기계공학부
학번	20241115

빅테크 기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독점문제와 규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신재진(기계공학부)

<목차>

I. 서론

II. 빅테크 기업 독점의 문제점

1. 독점으로 인한 타 기업의 경쟁력 약화
2. 개인정보 무단수집

III. 해외 법률과 비교를 통한 국내 법 개선 방안

1. 해외 법률과의 비교
2. 국내 법 현황과 개선 방안

IV. 결론

V.참고문헌 정리

I. 서론

빅테크(Big Tech)기업이란 첨단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기업을 의미한다.¹ 다수 문헌이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보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Google(Alphabet), Apple, Facebook(Meta), Amazon이 있다.² 국내에서의 빅테크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³, 국내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빅테크에 가장 근접한 기업으로 언급된다.⁴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출시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엔진으로 검색을 하며,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의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아마존과 네이버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분야에 진출해 구축해 놓은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한편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을 찾아보았을 때 주제 대부분이 금융 분야에서의 문제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빅테크기업의 정의가 우리나라에서만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금융권에만 국한된 빅테크의 의미를 외국에서 사용되는 정의로 확장하여 여러 사례들과 함께 분석해보고 해외의 빅테크 규제법과 국내 독점 방지법의 비교를 통해 국내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II. 빅테크 기업의 문제점

1. 독점으로 인한 타 기업의 경쟁력 약화

아래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을 제외한 빅테크기업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빅테크기업은 시장에서 빅테크기업에 위협을 주는 경쟁사업자 없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¹ 임양섭(2023.08.02). 「빅테크 주요 개발자 회의동향 및 시사점」, 1쪽.

² 이석훈, 조성훈(2023.01.27).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3쪽.

³ 김태림(2021.06.01). 「[해시태그 경제 용어]빅테크(big tech)」, 한경비즈니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57544?sid=101>(2024.06.14).

⁴ 이석훈, 조성훈(2023.01.27).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3쪽.

자료가 2020년 기준임을 감안했을 때 관련 산업이 더 활발해진 지금의 빅테크 시장 점유율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1]

주: 1) 2020년 기준
자료: Statcounter, Statista

빅테크기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 방대한 양의 이용자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새로운 산업에 수월하게 진입하거나 잠재적인 경쟁기업들을 저지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고객데이터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진입 장벽의 원천이 될 수 있다.⁶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기술은 여타 생산기술과 같이 규모의 경제를 따르기 기초자본이 많으며 미리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한 빅테크 기업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비해 데이터 수집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이는 곧 빅테크의 경쟁력 증대로 이어진다. 기업은 고객데이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더 많은 사용자를 자사 서비스에 정착시킬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데이터 양에 있어서 양극화가 발생해 기존에 시장에 진입해 있던 중소기업, 즉 잠재적인 경쟁기업의 성장을 저지할 수 있고, 이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이어져 빅테크 기업이 타 기업의 사업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빅테크기업은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여 다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애플의 사례와 구글과 아마존의 사례가 있다. 애플이 애플페이, 아이메시지등의 이용을 아이폰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쇄적인 앱스토어 정책을 고집하거나 자체 앱 외의 디지털 지갑의 추가를 불가능하게 하고 애플의 제품과 타사 기기 사이의 연동을 제한하는 등의 '애플 전용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존 애플기기 이용자들이 추가적인 액세서리 구매를 고려할 때 타사 액세서리의 사용을 크게 불편하게 만들어 사실상 애플의

⁵ 이규환, 곽윤영(2021.03.19).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국제경제리뷰』 제2021-6호, 한국은행.

⁶ 이석훈, 조성훈(2023.01.27).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22쪽.

기기를 구매하도록 암묵적으로 유도한 것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 위반혐위로 제소시키기도 하였고⁷, 구글이 독점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타사 쇼핑서비스의 노출을 줄이고 자사 쇼핑서비스를 많이 노출해 소비자들이 자사 쇼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아마존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자사에 유리한 결과가 검색창 상단에 뜨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EU와 미국에 의해서 제재 당하기도 하는 등⁸의 여러 사례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 중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이 26.4%, '부당 요구'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⁹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국내외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 사회적인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무단수집

빅테크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는 기업이 자신들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이용되거나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명시되어 있듯, 기업이 사용자에게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할 정보의 범위, 정보 보관 기간등을 공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구글이 '시크릿모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타겟형 광고를 설정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고¹⁰, 빅테크 기업이 최근 불이 붙은 AI 개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챗GPT와 같은 AI의 학습 데이터로 SNS에 올라온

⁷ Associated Press(2024.03.22). Apple antitrust lawsuit: DOJ's Merrick Garland holds press conference (full remarks),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QQUcm7lcl0>(2024.06.14).

⁸ 이상은(2024.06.13). 「EU·美당국, 구글·아마존 '자사 서비스 우대' 제재」, 한경글로벌마켓,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350651>(2024.06.14).

⁹ 진민경(2023.04.11). 「법망 피해가는 '온라인플랫폼' 폐해 잡는다...백혜련, 온플법 발의」,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2405>(2024.06.14).

¹⁰ SBS 뉴스(2024.04.02). <'비밀' 지켜준다더니 정보 수집한 구글..."수십억 건 기록 삭제"/SBS/뉴블더>,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Hlk0PLoo_Ok(2024.06.14).

개인정보들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이용한 사실도 드러나면서¹¹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이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AI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인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에 이 또한 빅테크 기업의 문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III. 해외 법률과 비교를 통한 국내 법 개선 방안

1. 해외 법률과의 비교

EU의 디지털 시장법(DMA)-EU가 빅테크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위해 2022년에 제정한 법으로, 특정 기준에 따라 거대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개발사가 공인한 앱스토어(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구글플레이 등)이외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스토어 측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를 하도록 한 후 결제 과정에서 애플, 구글과 같은 기업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II장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구글과 아마존을 이용하여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제품 상위노출을 이용한 자사제품 우대행위 금지 및 검색 노출 순위 공정화/비차별화를 해야하는 의무를 기업에 지게 한다. 또,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기본 앱과 인공지능 비서의 일방적인 탑재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타사의 메신저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시에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필요로 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의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¹³

¹¹김선희(2024.04.08). 「"빅테크들, 저작권 규정 무시한 채 AI 학습 데이터 마구잡이 수집"」, YTN사이언스,

», YTN사이언스,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_today.php?s_mcd=0082&key=202404081133113812(2024.06.30).

¹² 네이버지식백과(2024.03.08). 「디지털시장법」,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04128&cid=43667&categoryId=43667>(2024.06.14).

¹³ 양용현,이화령(2021.08.12).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KDI,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171&source=newsletter&cat=forecast&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newsletter_210813(2024.06.14).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플랫폼이 이해상충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¹⁴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삼켜서 시장을 더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업이 스스로 증명해야되는 법안.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¹⁵-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다른 기업과 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용자가 타사의 서비스로 갈아타는 데 회원가입, 정보등록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여줘 타사 서비스로 넘어가는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미국의 반독점 법안에는 반독점 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면 기업을 분할시키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여러 법안들이 마련되어있다.

2. 국내 법 현황과 개선 방안

검색결과 우리나라 법률 중에는 외국의 법률들처럼 빅테크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규제하는 법안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일상생활에서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사 서비스 우대현상을 접할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상품을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적립금을 더 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카카오톡에서 결제할 때의 경우 상품을 결제할 때 타사 서비스가 아닌 카카오프랜치를 이용하면 적립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식으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자사 상품의 우대는 미국법률과 EU법률에 의거하면 경쟁 제한적 영업행위로 취급되어 규제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카카오톡의 자사 가맹 가입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징수하기도 하고¹⁶, 백혜련 의원이 한국판 디지털시장법인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¹⁷,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킨 쿠팡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는 등¹⁸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대 IT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¹⁴ 위와 같음

¹⁵ 위와 같음

¹⁶ SBS뉴스(2021.09.11). <'카카오 배차 몰아주기' 본격 조사...알고리즘 왜곡 정조준>, 네이버TV, <https://tv.naver.com/v/22394914>(2024.06.14).

¹⁷ 9번과 같음

¹⁸ 이영준, 박은서(2024.06.14). 「쿠팡 때린 공정위... 1400억대 과징금」,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economy/distribution/2024/06/14/20240614001006?wlog_tag3=naver(2024.06.14).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 규제법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빅테크 규제에 대한 여러 이해단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위 문단에서 언급한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법률안을 빠르고 적절하게 검토하여 수용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너무 약하게 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법망을 우회하여 전체적인 사회 후생감소가 우려되고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한다면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이 역시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의 규제를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반독점법에 있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이용자 데이터의 독점을 막고 기업간 데이터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률처럼 기업이 타 기업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타 서비스로 넘어가기 위해 별다른 추가비용의 발생없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II장 1절에서도 인용했듯이, 이용자 데이터는 시장 진입장벽의 원천이 될 수 있기도 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빅테크 기업들의 이 자원독점을 막는다면 사업 진출의 장벽을 낮춰 여러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건전한 경쟁이 이뤄져 사회적인 후생 증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현상은 사회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빅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기에 우리는 빅테크기업이 저지르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현황의 제기와 빅테크 기업의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주목하고 해외의 빅테크 기업 규제 사례, 규제 법안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빅테크 기업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글이 현재 외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향후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문헌의 한계점은 사회 현상과 법령에 관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학습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주제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편향된 관점으로만 서술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결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중 규제를 너무 약하게도 강하게도 하면 안된다고 서술하였는데 약한 규제와 강한 규제의 기준점이 어디인지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V.참고문헌 정리

임양섭(2023.08.02). 「빅테크 주요 개발자 회의동향 및 시사점」, 1쪽.

이석훈, 조성훈(2023.01.27).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3쪽.

김태림(2021.06.01). 「[해시태그 경제 용어]빅테크(big tech)」, 한경비즈니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57544?sid=101>(2024.06.14).

이석훈, 조성훈(2023.01.27).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3쪽.

이규환, 곽윤영(2021.03.19).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국제경제리뷰』 제 2021-6호, 한국은행.

이석훈, 조성훈(2023.01.27).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22쪽.

Associated Press(2024.03.22). Apple antitrust lawsuit: DOJ's Merrick Garland holds press conference (full remarks),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QQUcm7lcl0>(2024.06.14).

이상은(2024.06.13). 「EU·美당국, 구글·아마존 '자사 서비스 우대' 제재」, 한경글로벌마켓,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350651>(2024.06.14).

진민경(2023.04.11). 「법망 피해가는 '온라인플랫폼' 피해 잡는다...백혜련, 온플법 발의」,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2405>(2024.06.14).

SBS 뉴스(2024.04.02). <'비밀' 지켜준다더니 정보 수집한 구글..."수십억 건 기록 삭제"/SBS/뉴블더>,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Hlk0PLoo_Ok(2024.06.14).

김선희(2024.04.08). 「"빅테크들, 저작권 규정 무시한 채 AI 학습 데이터 마구잡이 수집"」, YTN사이언스,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_today.php?s_mcd=0082&key=202404081133113812(2024.06.30).

네이버지식백과(2024.03.08). 「디지털시장법」,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04128&cid=43667&categoryId=43667>(2024.06.14).

양용현,이화령(2021.08.12).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KDI,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171&source=newsletter&cat=forecast&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newsletter_210813(2024.06.14).¹ SBS뉴스

(2021.09.11). <'카카오 배차 몰아주기' 본격 조사...알고리즘 왜곡 정조준>, 네이버TV,
<https://tv.naver.com/v/22394914>(2024.06.14).

이영준, 박은서(2024.06.14). 「쿠팡 때린 공정위... 1400억대 과징금」,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economy/distribution/2024/06/14/20240614001006?wlog_tag3=nave](https://www.seoul.co.kr/news/economy/distribution/2024/06/14/20240614001006?wlog_tag3=naver)
r(2024.06.14).

귀하가 제출한 본 서면은 교육 목적의 교재 제작과 수업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